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p> <p>7.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930</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01년 9월 일 건설위원회</p>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p> <p>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2001년 9월 10일 상정)</p> <p>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창구 건설국장)</p> <p><input type="checkbox"/>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 주요 시설물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 시설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또한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p><input type="checkbox"/>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의안 번호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구관리협의회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공동구관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p>○ 하천복개구조물의 관리자를 복개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주용도에 따라 세분화함. (안 제3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주차장, 직환장 포함)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은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은 자치구청장 -주용도가 상기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p>○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장 및 제7장)</p> <p>-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안 제4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p>-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안 제4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 정기점검 :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 필요시
의안 번호	930		
<p>3.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p>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훈)

□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의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된 일부규정들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조례구성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 안 제1장 총칙관련
 - 안 제2조에서 적용대상 시설물로 '하천 및 하천시설물'을 추가한 것은 그동안 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별도 규정하여 온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93.2.30. 훈령 제759호)을 본 조례와의 중복을 이유로 폐지키로 한 서울시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와 가로등, 가로수·녹지, 노상주차장을 삭제한 것은 안 제1호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안 제7호의 "기타 도로부속물"에 각각 포함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안 제4조와 안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각각 신설한 것은 주요시설물별로 분산 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 제5조, 제14조, 제28조, 제37조 등의 시설물별 "총괄관리자 지정" 및 현행조례 제6조, 제19조, 제40조 등의 시설물별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안전점검의 실시와 인력장비 등의 확보 및 사고관리체계 확립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통합하여 일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장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 안 제11조(도로공사의 시행)와 안 제16조(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 도로공사 시행자의 교통관리대책 수립시행과 시설물 관리자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안전관리 및 양호한 조명수준유지,

시설물 관리실태의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한 것은 그동안 각종 도로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어 온 시민안전 저해 및 교통불편 초래 사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2001년 하절기 폭우시 발생한 가로등 등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 기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조례안에서는 현행조례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긴급 안전점검 실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조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3장 공동구 관련

- 안 제17조(공동구 관리) 제4항에서 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는 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18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제5항에서 관리자가 공동구 유지관리 도면을 작성 또는 변경한 때에는 소방본부장 및 점용자 등에게 배포케 하여 공동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안 제18조(공동구 관리 협의회 구성·운영)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6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구관리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되는 "공동구관리협의회"와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의 구체적 위원 위촉과 기능 등을 유사 협의회와의 구성 및 운영 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공동구 관련 조례안 또한 현행조례에 대한 내용변경 없이 관계조문의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제4장 교통안전·관리시설물 관련

- 안 제31조와 제32조 등의 제목 및 본문용어 중에 현행조례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계 법령인 "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용어개정에 따라 "지능형 교통체계"로 변경하고, 안 제34조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지점의 도로굴착 등을 허가할 경우에 그 허가권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와 사

<p>전 협의토록 하여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p> <p>-기타 조례안에서는 관련조직 및 규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정리 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p> <p>○ 제5장 하천복개구조물 관련</p> <p>-안 제35조(점용자 지정 등)에서 하천복개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점용자를 시설물의 주용도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및 구청장과 소관부서의 장으로 세분화하여 그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p> <p>-기타 조례안은 관계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조문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p> <p>○ 제6장 하천 및 하천시설물과 제7장 하수도 시설물 관련</p> <p>-안 제40조 내지 제45조에서는 본조례의 개정에 따라 추가 포함된 하천 및 하천시설물과 하수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공동구 시설관리 규정의 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종합검토의견입니다.</p> <p>○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및 하천시설물 등을 조례적용 대상시설물에 추가하고 시설물 관리자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안전관리 체제 강화와 공동구 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신설하여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조문정리를 통해 조례구성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다만, 일부 미흡하게 표기되어 있는 조문의 별첨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례 체계에 맞게 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p> <p>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별첨)</p> <p>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의원 15명 전원 일치 의결)</p>	<p>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p> <p>제3조(점용허가 등) ①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점용 또는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제4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점용료는 당해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점용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때에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다.</p> <p>③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p>
---	--